

#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15.12.

제 출 자: 맑은환경과장

## 1. 제안이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용어 정비 (안 제1조, 안 제10조, 안 제13조)
- 나. 환경보전계획 수립시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 없는 성동환경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확정하는 절차를 법령에 맞게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확정하도록 개정 (안 제10조)
- 다. 법령의 위임 없이 환경조사내용 및 조치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기업이나 관련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을 삭제 (안 제26조)
- 라. 성동환경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 (안 제29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환경정책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5. 12. 24. ~ 2016. 1. 13.)

2) 규제심사: 기획예산과

3)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4) 성별영향분석평가: 보육가족과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성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및 제5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구·사업자·구민의 책무 및 구”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사업자·구민의 책무 및 성동구”로, “등을 규정하여, 구의”를  
“등을 규정하여, 성동구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는”을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이라 함은”을 ““환경”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  
연환경”이라 함은”을 ““자연환경”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생  
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를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환경오염”이라 함은”을 ““환경오염”이란”으로, “대기

오염”을 “대기오염”으로, “악취등으로서”를 “악취 등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환경보전”이라 함은”을 “”환경보전”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을 “”지구환경보전”이란”으로, “환경보전행위로서”를 “환경보전행위로서”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또는 기타”를 “또는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접근할”을 “대한 알”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환경기본계획 등”을 “환경보전계획 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하고, 제10조 제1항 중 “환경보전시책”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를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한강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제5항 중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개발,”를 “개발은”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 하여야 한다”를 “실시한다”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효과·사회적형평”을 “효과·사회적형평”으로, “다음세대”를 “다음세대”로,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2인을 포함한 40인”을 “2명을 포함한 40명”으로, “구성하고”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2인과 분과위원장 3인”을 “2명과 분과위원장 3명”으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중 “구 정분야별”을 “구정분야별”로, “및 대안제시”를 “및 대안 제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0인”을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위원본인”을 “위원 본인”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관업무담당주사가”를 “소관업무담당팀장이”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0조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한다.

제42조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0조에 따른”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43조 중 “제32조·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35조에 따라”로,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및 제41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로 한다.

제44조 중 “조례 시행”을 “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기본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환경정책 기본법 제2조 및 제32조의 규정</u>에 따라 <u>서울특별시성동구(이하 "구"라 한다)</u>의 <u>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사업자·구민의 책무 및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u> 등을 규정하여, <u>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u>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본이념) ① <u>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u></p> <p>②·③ (생략)</p> <p>④ <u>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u></p>	<p><u>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 기본조례</u></p> <p>제1조(목적) ----- 「<u>환경정책기본법</u>」 ---- 및 <u>제5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u>-----</p> <p>----- <u>서울특별시 성동구·사업자·구민의 책무 및 성동구</u> ----- <u>등을 규정하여, 성동구의</u> -----</p> <p>-----.</p> <p>제2조(기본이념) ① <u>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u>는 --</p> <p>-----</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제1항부터 제3항까지</u>-----</p> <p>-----.</p>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 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각호의 -----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정의) ----- 뜻은 -----

1. "환경"이란 -----  
-----.
2. "자연환경"이란 -----  
-----  
-----  
-----.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  
-----  
-----.
4. "환경오염"이란 -----  
----- 대기오염-----  
-----  
----- 악취 등으로서 -----  
-----.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국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내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 8. (생략)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② (생략)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

5. "환경보전"이란 -----  
-----  
-----  
-----  
-----  
-----  
-----

6. "지구환경보전"이란 -----  
-----  
-----  
-----  
-----  
----- 환경보전행위로  
서 -----  
-----  
-----

제5조(구의 책무) -----  
----- 각호  
의 -----  
-----  
-----  
-----

1. ~ 8.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또는 그 밖의 -----

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조(구민의 권리) ① (생략)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환경기본계획 등

제10조(환경기본계획) ①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구민의 권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대한 알 -----  
-----

제2장 환경보전계획 등

제10조(환경보전계획) ① -----

-----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  
-----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성동환경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생략)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

③ ----- 환경보전계획-----  
-----  
-----  
-----.

④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한강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장과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  
-----  
----- 환경보전계획-----  
-----.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

과 개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3. (생략)

③ (생략)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적용 및 유지)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이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 개발은 -----  
----- 범위에서 -----  
-----.

2.·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적용 및 유지) ① -----  
-----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  
-----  
-----.

② ----- 환경보전계획-----  
-----  
-----.

제18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  
----- 필요한 -----  
-----.

② -----  
-----  
-----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 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과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등의 지  
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환경조사) ① 구는 환경실  
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  
치결과를 공표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7조(환경백서) ① (생략)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2. (생략)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28조(기능) 성동환경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지속가능"이라 함  
은 지역개발 사업 등을 경제적  
효과·사회적형평 및 환경보

-----  
-----  
-----  
- 범위에서 -----  
-----.

제26조(환경조사) ① -----  
-----  
-----  
----- 실시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환경백서) ① (현행과 같  
음)

② -----  
- 각 호의 -----  
-----.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제28조(기능) -----  
----- 각  
호의 -----.

1. -----  
-----  
효과·사회적형평 -----

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다음세대의 삶의 질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구정을 위한 보전과 개발의 통합조정에 관한 방향제시 및 자문

2. ~ 4. (생략)

제2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자치구 관련부서장과 구의원·민간단체·기업·전문가·학계·종교계·구민 등 환경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생략)

제30조(임원 등) ① 위원회에는 부구청장을 포함한 위원장 2인과 분과위원장 3인을 두며,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위원장중 1인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인은 위원총회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은

-----  
----- 다음 세대-----  
----- 말한다-----  
-----  
-----  
-----

2. ~ 4. (현행과 같음)

제29조(구성) ① -----  
- 2명을 포함한 40명 -----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 풍부한 사람 ----- 위촉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임원 등) ① -----  
----- 2명 -----  
과 분과위원장 3명-----  
-- 1명-----  
-----.

② (현행과 같음)

③ ----- 1명-----  
----- 1명-----  
-----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⑤ (생략)

제32조(집행위원회) ① (생략)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분과위원장·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중 1인이 집행위원장이 된다.

③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④ (생략)

제33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주관하여 관장한다.

1. (생략)

2. 정책분과위원회 : 환경보전과 개발에 관한 정책대안 제시, 제시된 구정분야별 친환경적 지침에 따른 구정구현상황 평가, 집행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3. (생략)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집행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명  
-----.

③ -----  
각 호와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구정분야별 -----  
-----  
----- 및 대안 제시

3. (현행과 같음)



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의 승인을 얻어 총무를 선출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생략)
3. 위원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35조(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2. (생략)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④ (생략)

③ -----  
- 1명을 포함하여 10명 -----  
-----  
-----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위원의 위촉 해제) -----  
-----  
----- 위촉 해제 -----  
-----.

1. -----  
----- 그 밖의 -----  
-----
2. (현행과 같음)
3. 위원 본인 -----  
-----

제35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인정할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의안의 처리)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간사와 서기) ①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 간사는 맑은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지정하는 소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9조(교육 및 홍보) ① 위원회는 구민의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해 구민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환경보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기타 환경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각종 활동

제40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제36조(의안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라 -----  
-----  
-----.

제37조(간사와 서기) ① -----  
-----  
----- 1  
명-----  
-----.

② -----  
-----  
----- 소관업무담당팀장  
의 -----.

제39조(교육 및 홍보)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  
-----

제40조(공청회 등 개최) -----  
----- 인정  
할 -----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2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수당) 구청장은 제32조·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  
-----.

제42조(재정지원) ----- 제40조에 따른 -----  
-----  
필요한 ----- 범위에서 -----.

제43조(수당) ----- 제32조·제35조에 따라 -----  
-----  
----- 및 제41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  
-----.

제44조(시행규칙) --- 조례-----  
-----  
--.